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5538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의자 : 강준현 · 김승원 · 양부남
윤준병 · 이재관 · 이해민
임호선 · 정준호 · 조인철
한정애 · 허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수법이 IT기술을 바탕으로 점차 복잡·교묘해지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상황임.
영국, 싱가폴 등 해외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권 등의 배상책임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분담 중이나 현행 금융회사의 피해금 환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은 피해자 구제의 실효적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인들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프라 운영기관인 금융회사들과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5천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금을 보상하되,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상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의 지원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보상대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한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피해의 보상의 대상 여부의 확인, 보상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의 허위 보상신청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고자 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6조제5호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분담) ①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피해금을 말하며 피해환급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피해의 회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1. 피해자가 개인일 것
2. 피해금이 해당 피해발생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의 방법으로 이전되었을 것
3. 피해금을 이전한 원인,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

나. 투자, 출자, 금융상품의 매수·가입 등 명칭에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

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다만,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불법행위, 사행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최대 금액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신청 및 산정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피해 보상의 판단 ·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 정보의 제공 및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피해금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3. 금융회사가 이체 · 송금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거래지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체 · 송금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

지 않았거나 신고한 날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 경과한 경우

5.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하거나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는 피해 보상의 공동 분담을 위하여 피해금을 피해발생계좌로부터 송금·이체받은 사기이용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보상의 대상 여부의 확인, 보상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관한 조사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의자에 관한 수사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피해발생계좌, 피해발생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피해발생계좌에서 발생한 피해 및 피해자에게 환급되거나 지급된 피해환급금·피해보상금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⑦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 보상받은 피해자 및 보상한 금액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범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때에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는 거짓으로 피해를 보상받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그 피해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피해를 보상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⑩ 피해자는 피해환급금,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은 금액,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 그 밖에 피해의 회복 또는 반환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은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금융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보상의 처리 및 분쟁해결의 지원) ①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상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의 지원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보상대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판단 및 산정(이하 “보상판단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한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피해자 또는 금융회사는 피해 보상의 처리에 필요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상판단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판단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보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금액의 산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그 판단 및 산정을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중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관계 당사자 및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금융회사에 대하여 보상판단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보상판단지원위원회의 보상여부판단지원의 결과를 피해자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금융회사는 통지받은 결과를 고려하여 보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 금액의 산정을 하여야 하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통지받은 결과를 고려한 보상 여부의 재판단 및 보상 금액의 재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판단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보상판단지원의 요청 절차, 방법 및 통지, 그 밖에 보상판단지원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짓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을 신청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p><u>제14조의3(금융회사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분담) ① 피해자 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피해금을 말하며 피해환급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피해의 회 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u></p> <p><u>1. 피해자가 개인일 것</u></p> <p><u>2. 피해금이 해당 피해발생계좌 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 이체의 방법으로 이전되었을 것</u></p> <p><u>3. 피해금을 이전한 원인, 목적 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할 것</u></p> <p><u>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를 지급하 기 위하여 피해금을 이전 한 경우</u></p> <p><u>나. 투자, 출자, 금융상품의</u></p> |

매수 · 가입 등 명칭에 관
계없이 피해자 또는 제3자
가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
해금을 이전한 경우(다만,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
한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
는 제외한다)

다. 불법행위, 사행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하기 위한 목
적으로 피해금을 이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
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최대 금
액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
로 하며 신청 및 산정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제1
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피해
보상의 판단 · 처리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이나 진술, 정보의 제
공 및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피해금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3. 금융회사가 이체·송금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거래지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체·송금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날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5.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이용자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하거나 확산시킬 우
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 보
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
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⑤ 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
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금융회
사는 피해 보상의 공동 분담을
위하여 피해금을 피해발생계좌
로부터 송금·이체받은 사기이
용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대
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
기 피해의 보상의 대상 여부의
확인, 보상금액의 산정 등에 필
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기관 및 금융감
독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
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

관 및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관한 조사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의자에 관한 수사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피해발생계좌, 피해발생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피해발생계좌에서 발생한 피해 및 피해자에게 환급되거나 지급된 피해환급금 · 피해보상금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⑦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 보상받은 피해자 및 보상한 금액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범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하여 보

상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면 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때에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는 거짓으로 피해를 보상받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그 피해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피해를 보상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⑩ 피해자는 피해환급금,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은 금액,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 그 밖에 피해의 회복 또는 반환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로

<신 설>

부터 피해를 보상받은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금융회사에 반환하
여야 한다.

제14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보상의 처리 및 분쟁해결의 지원) ①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상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분쟁 해결의 지원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보상대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판단 및 산정(이하 “보상판단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한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피해자 또는 금융회사는 피해 보상의 처리에 필요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상판단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판단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보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금액의 산정

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그 판단 및 산정을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중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관계 당사자 및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금융회사에 대하여 보상판단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보상판단지원위원회의 보상여부판단지원의 결과를 피해자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금융회사는 통지받은 결과를 고려하여 보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 금액의 산정을 하여야 하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통지받은 결과를 고려한 보상 여부의 재판단 및 보상 금액의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판단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보상판단지원의 요청 절차,

| | |
|--|---|
| <p>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4. (생략) <u><신설></u></p> | <p><u>방법 및 통지, 그 밖에 보상판단 지원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6조(벌칙) ----- ----- ----- -----.</p> <p>1. ~ 4. (현행과 같음) <u>5. 거짓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을 신청한 자</u></p> |
|--|---|